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34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박휘영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4. F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박영생

변론 종결 2019. 8. 30.

판결 선고 2019. 10. 1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단51184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E, F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5. 접수 제67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같은 법원 2016. 12. 15. 접수 제67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E, F은 같은 법원 2016. 3. 15. 접수 제12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위 말소등기절차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각 68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E, F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의 전보배상으로서 대상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추가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E,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위 피고들이 원고 생존 동안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인데,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장래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피고 E, F으로부터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한 것이 부담부 증여로서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그 상대방인 피고 E, F이 그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23. 후견인(사단법인 B) 측 변호사가 피후견인(원고)을 면담할 당시 '원고는 G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F, E에게 증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 E, F은 실제로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당시 피고 E, F이 원고에게 'G이 원고의 재산을 빼앗아가려고하니 원고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는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9. 23. 후견인(사단법인 B) 측 변호사와 면담할 당시 'G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F, E에게 증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 원고의 딸인 G이 원고와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호에 관하여 G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E, F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E, F에 대한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당시에 이르러 피고 E, F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집행불능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피고들이 피고 D,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360,000,000원에 대한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살피건대,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대상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위대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E, F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대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이미선, 판사 이준민